
일본의 공제사업 관련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insurance business law amendment
regarding Kyosai in Japan)

이윤호*
Yunho, Lee

<국문 요약>

일본은 2005년 소액단기보험업자의 신설과 공제사업의 보험업법 편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안의 시행과정에서 공익법인제도의 대대적인 개편과 개정법안 적용에 적합하지 않는 공제단체 문제가 부각되면서, 2010년에 인가특정보험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개정하였다. 재개정법에서는 완전한 감독일원화가 보류되었고, 인가특정보험업자와 소액단기보험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원화하였다. 이는 공제의 보험업법 적용과 감독일원화 논의가 공제의 다양성과 기능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 국문색인어 : 소액단기보험업, 공제, 인가특정보험업, 보험업법

* 대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I. 머리말

공제는 가입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미래에 일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소정의 급부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하다. 이런 관점에서 공제사업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보험법규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도 2005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업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우체국보험과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공정경쟁과 감독일원화 차원에서 유사보험에 대하여 보험법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가 농협법의 개정으로 농협보험이 보험업법의 규제에 편입되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우체국보험과 신한, 새마을금고, 수협¹⁾의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상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보험과 유사보험의 감독일원화 이슈는 다소 수그러진 모습이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유사보험문제를 보면 이들 공제 외에도 약 90여개의 공제가 현재 운영 중¹⁾이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법제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보험환경과 유사한 일본의 공제관련 개정보험업법의 주요 내용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2005년 보험업법개정 배경과 소액단기보험업의 현황

1. 보험업법개정 배경

일본에서 공제사업자는 설립근거법의 유무에 따라 면허공제와 무면허공제로 나누어지는데, 면허공제는 근거법을 가지고 관할 관청의 면허와 감독을 받으면

1) 국내의 공제현황 및 문제점에 관하여는 이기형(2012)을 참조.

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²⁾ 무면허공제는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가 특정한 다수로부터 유사보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003년 봄부터 무면허공제의 규모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공제사업자의 신용문제와 다단계상법 등 민원이 급증하였고,³⁾ 2004년에는 주요 경제지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그 해 총무성⁴⁾과 금융심의위원회가 각각 무면허공제의 실태⁵⁾를 조사하였고, 2006년 일본보험학회는 무면허공제문제를 공통논제로 선정하여 학술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특히 금융심의위원회는⁶⁾ 무면허공제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 무면허공제의 보험업법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첫째 무면허공제의 급증과 그 사업내용이 다양화함에 따라 보험업과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둘째 무면허공제가 보험회사들의 틈새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 셋째 다단계판매와 같은 부적절한 판매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넷째 재무적 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리하여 2005년 이를 반영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되었고 2006년 4월에 「보험업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2005년 개정법이라 함)이 시행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불특정 다수” 요건을 삭제하여 “특정한 다수를 상대로 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도 보험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소액단기보험사업자’라는 범주를 신설함으로써 보험업법 적용을 받는 보험사업자의 유형⁷⁾을 추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⁸⁾

2) 그 종류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JA공제, 소비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현민공제(縣民共濟) 등 비교적 실질적인 감독을 받고 있는 공제에서부터, 근거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감독을 받는 공제 등, 업무 내용면에서만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강도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3) 國民生活センター(2004)에 의하면, 공제에 관한 민원은, 1998년 363건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02년에는 800건을 넘었다. 또한 불법권유(특히 피라미드 판매)에 관한 민원이 1998년 4건에서 2002년 99건, 2003년 121건을 급증하였다.

4) 總務省(2004) 무면허공제단체 370개(임의단체 166개, 기업내부공제단체 85개, 공익법인 119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특히 임의단체를 중심으로 민원을 급증하고 있는 바, 이들 단체의 모집방법의 적정성의 확보, 정확한 재무정보의 공시, 적정한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 金融審議會金融分科會第二部會報告書(2004)

6) 金融審議會金融分科會第二部會報告書(2004)

2. 소액단기보험업 현황

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의 공표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2개, 2007년도에는 29개, 2008년도 32개, 2009년 2개, 2010년 2개(합병으로 1개 업자 감소), 2011년 4개(손해보험회사로 이행으로 2개 사업자 감소)의 사업자가 각각 신규로 설립되어, 2012년 3월 현재 69개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다. 2012년 3월 현재, 업계전체 보유계약 건수 464만 건(전년대비 109.2% 성장), 수입보험료 491억 엔(전년대비 105.5% 성장), 대리점 2,7000개, 모집자격자 112,076명에 이르고 있다.

종목별 내역을 보면, 애완동물보험분야의 소액단기보험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로 이행하여 이 분야의 계약건수와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였지만, 가재보험(家財保險)에서는 계약건수와 수입보험료 면에서 전년도 대비 110% 이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비용보험분야도 수입보험료 면에서 전년도 대비 162.2% 급성장하고 있다.

<표1> 종목별 소액단기보험 현황(2012. 3)

보험종목 업자 수	건수 (건)	증가율 (%)	점유율 (%)	보험료 (천 엔)	증가율 (%)	점유율 (%)
종목합계	4,642,628	9.2	100	49,177,475	5.5	100
가재/배상책임	4,188,762	11.1	90.2	37,633,669	10.5	76.5
비용/기타	60,155	19.4	1.3	719,363	162.3	1.5
애완동물	116,829	-30.4	2.5	3,188,509	-35.1	6.5
생보/의료	276,882	5.2	6.0	7,635,934	3.9	15.5

<자료> 2012年少額短期保険ガイドブック

- 7) 2005년 개정법 이전, 보험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및 간이생명보험이었고, 그 외의 단체는 가령 실체는 보험사업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공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 8) 그러나 모든 공제단체가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면허공제나 기업 내의 공제, 노동조합의 공제, 학교공제, 지방자치단체의 공제 그리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제는 보험법적용에서 제외된다.

Ⅲ. 2005년 개정법의 주요내용

1. 보험업의 정의

2005년 개정법 이전의 보험업법에서의 “보험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인수를 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면허공제가 급증하고 그 내용이 다양화함에 따라 보험업과 “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과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게 되어,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정의에서 “불특정한 다수”라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보험업법 적용제외 공제를 개별법령으로 열거하였는데 그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근거법이 있는 공제⁹⁾, 둘째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¹⁰⁾, 셋째는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의 수가 1,000명 이하인 공제¹¹⁾, 넷째는 자치원리에 입각하고 보험계약의 인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단체¹²⁾가 영위하는 공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액단기보험업 감독지침은 일정한 인적·사회적 관계에 입각한 경조사의 부조금 정도의 금액을 급부금(10만 엔 이하)으로 지급하는 공제사업도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액단기보험업

- 9) 보험업법 이외의 특정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보험업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 10) 지방공공단체가 조례에 입각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보험업법으로 그 적정성을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 11) 소규모의 경우 당사자들의 자치에 의해 감독이 가능하고, 가령 그 단체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파탄 나더라도 그 피해자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 12) 이러한 단체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첫째는 단체의 구성원 상호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이라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명확한 경우, 둘째는 계약인수자와 그 상대방이 지극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명확한 경우, 셋째는 단체 구성원 중 보험가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구성원이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이다. 행정당국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단체를 14개로 구분하고 있다.

(1) 취지

공제사업은 보험과 동일한 기능의 상품을 제공하므로 계약자보호나 공정한 경쟁의 관점에서 보험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제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와 다른 틈새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틈새보험(소액의 단기보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따로 규제할 근거가 필요했다.

(2) 개요

소액단기보험업이란, 보험기간이 2년 이내이고, 보험금액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법2조 117항). 소액단기보험업은 일반 보험회사처럼 장기계약이나 거대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내용도 보험회사에 비하여 완화된 내용이다.

가) 진입규제

소액단기보험업은 등록제이다. 따라서 등록거부요건에 해당하면 등록은 거절되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된다. 면허제에 비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이 약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나) 재정건전성 규제

소액단기보험업자는 보험계약자보호 관점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등을 보유해야 하는데, 최저자본금(혹은 기금)은 1,000만엔 이상이다(법 272조 4의 1항 2호, 시행령 38조의 3). 또한 자본금잠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순자산이 1,000만에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272조의 4 1항 3호). 그리고 다음 사업 연도부터 전년도에 연간수입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공탁금으로 예탁해야 한다(법272조의 5, 시행령38조의 4, 규칙211조의 9).

다) 사업규모의 제한

소액의 단기보험이더라도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파산하는 경우 그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1사업 연도 수입보험료의 총액이 50억 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법272조 2항, 시행령 38조).

라) 손생보검영과 상품내용규제

소액·단기의 범위 안에서 손·생보검영이 가능하다. 보험회사의 경우 장기계약리스크와 거대재해리스크를 분리한다는 원칙 하에서 손·생보검영이 금지되어 있지만, 소액단기보험업자에 대해서는 소액으로 단기의 보험계약만을 거래하므로 검영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지만¹³⁾, 손해보험은 2년 이내(법2조 17항, 시행령 1조의 5)로 규정하고¹⁴⁾ 있다. 보장범위는 경조사 부조금, 장례비, 일상적인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재물손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품별로 보험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보험 300만엔, 의료보험 80만엔, 고도장해보험 300만엔, 특정중증장해보험 및 상해사망보험 600만엔, 손해보험 1,000만엔을 각각 그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법2조 17항, 시행령 1조의 6).

그리고 생존보험,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 변액보험, 재보험, 외화표시보험, 보험금지급을 1년을 초과하여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은 소액단기보험업자의 인수가 금지되어 있다(법2조 17항, 시행령의 7).¹⁵⁾

마) 상품심사

소액단기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

13) 보험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래의 보험금지급에 대비하여 거수한 보험료를 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산운용리스크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만일 파산하는 경우라도 보험계약자 이전비용이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14) 保井외(2006)에 의하면, 무면허공제의 계약기간이 통상 2년인 임대차계약 등과 관형하여 체결되는 것이 많은 실태를 반영한 것임.

15) 이는 소액단기보험 인수만을 전제로 진입기준과 상품심사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적립형의 보험이나 자산운용을 전제로 하는 보험을 취급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 등 그에 상응하는 체제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保井(2006)전제서 참조).

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청에 등록신청을 할 필요가 있고(법 272조의 2) 또한 등록 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법272조의 19). 단, 소액단기보험업자의 경우 인수하는 보험이 소액·단기·소멸형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상품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방법서 및 보통보험약관의 심사기준은 보험회사에 비하여 간소화되어 있다. 또한 보험료산출방법서도 보험회사의 경우 행정청이 사전심사를 하지만, 소액단기보험업자의 경우 보험계리인이 확인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사전심사는 받지 않으며, 심사기준도 보험회사에 비하여 간소화 되어 있다.

바) 자산운용규제

자산운용은, 예·적금, 국채, 지방채, 금전신탁 등 상대적으로 운영 리스크가 낮고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에 한정되어 있다(법 272 조의 12, 규칙211조의 26~28).¹⁶⁾

사) 업무범위규제

소액단기보험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외, 원칙적으로 다른 업무를 행할 수는 없다(법272조의 11).¹⁷⁾ 보험회사에 비하여 이처럼 극도로 제한된 업무만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 관점에서 다른 업무에서 수반되는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함이며, 보험회사에 비하여 진입규제가 약하고 운용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아) 책임준비금 및 기타

보험회사의 계리에 관한 규정은 대개 소액단기보험자에게도 준용되고, 책임준비

16) 소액단기보험업자가 보험료로 수수한 금전, 기타자산의 운용방법은 인수한 보험기간이 단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운용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처럼 폭 넓은 자산운용을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액단기보험자를 위한 안정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7) 소액단기보험업에 관련하는 부수업무란,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소액단기보험업자 또는 보험회사 등의 보험업에 관련되는 업무대리 또는 사무대행을 말한다(법272조의 11 2항, 규칙 211조의 24).

금 외, 가격변동준비금, 지급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272조의 18). 단 소액단기보험업의 책임준비금의 계정과목은 보통책임준비금¹⁸⁾과 이상위험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가령 생명보험회사의 계정과목에 나타나는 보험료 적립금, 환급적립금, 위험준비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소액 단기보험업자가 인수하는 보험이 단기 소멸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⁹⁾

한편,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과 같은 안전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취급상품은 소액·단기·소멸형으로 한정하고, 자산운용은 안전자산에 한정하여 자산운용리스크를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사업 규모에 상응하는 공탁금 예탁이 의무화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만일 파산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안전망 적용은 오히려 보험계약자에게 과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액단기보험자에 관련하는 지급여력기준이나 정보공시규제, 모집규제 등은 기본적으로는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경과조치

(1) 특정보험업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된 보험업법상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형태는 기존의 「보험회사」와, 새롭게 정의된 「소액단기보험업자」이다. 따라서 공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정보험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형태로 이행(移行)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행에 있어 공제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준비기간을 두고 있는데, 공제사업자가 법 개정 후에도 소액단기보험업자로 이행하지 않고도 공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정보험업 및 특정보험업자이다.²⁰⁾

소액단기보험업자와 달리 특정보험업자는 금융청에 신고만으로 종래의 사업을

18) 미경과보험료와 초년도수지잔고 중 많은 금액을 적립함.

19) 보험료적립금은 장기보험계약의 평준보험료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기계약만을 인수하는 소액단기보험업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환급금적립금은 적립보험을 위한 책임준비금이므로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소액단기보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계정과목이다. 생보에서 위험준비금은 이상위험준비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20) 즉 종래의 공제사업을 특정보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2년 이내에 보험회사 혹은 소액단기보험자로 이행하던지, 혹은 계약을 다른 사업자에게로 이전하던지 해야 한다. 또한 개정법 시행 당시에 특정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가운데 시행일 이전에 인수한 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및 재산만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특정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런 경우 업무처리는 종전의 예에 따르고, 해당보험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해당업무 및 재산관리를 허용하고 있다(2005년 개정법 부칙 2조2항).

가) 특정보험자의 신고

2005년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정보험업을 영위하는 특정보험자는 동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각총리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 특정보험업자 규제

특정보험업자는 2년간의 준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업무상의 조치²¹⁾, 모집규제²²⁾, 행정당국의 검사와 감독²³⁾ 등의 면에서 소액단기보험자와 동일하게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법 부칙 4조). 또한 신제도로 원활한 이행을 위해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이전, 사업양도, 업무 및 재산관리의 위탁 등의 규정이 특정보험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특정보험업자가 특정보험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부칙 4조 13항).²⁴⁾

다) 특정보험업자의 이행

특정보험업자에게는 보험업법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원칙적으로 2년의 이행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보험회사로 이행하던지, 소액단기보험자

21) 업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고 또 그런 업무가 건전하고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조치(법부칙 42조 1항 등).

22)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련된 규제의 많은 부분이 적용 됨(법 부칙 4조 1항).

23) 업무검사 외에 특정보험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약관의 내용변경을 비롯하여 업무개선,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부칙 4조 1항, 법 272조의 22~24, 법 272조의 25 1항, 법 272조의 26~27).

24) 이는 잔여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로 이행하던지, 보험업법 적용제외의 공제사업을 계속(제도공제로 이행을 포함)하던지, 다른 보험회사 등과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장을 계속하던지, 다른 보험회사 등에 공제계약을 이전하던지,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단, 특정보험업자가 2년의 이행기간 중에 이행조치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을 한도로 그 전에 인수한 보험계약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그 사이에 보험회사 또는 소액단기보험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해당보험계약을 이전 혹은 해당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법부칙 2조 3항). 또한 2년간의 이행기간 중에 보험회사의 면허 또는 소액단기보험업자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혹은 업무폐지 명령을 받는 경우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보험회사 또는 소액단기보험업자에 이전하고 업무를 폐지한다(개정법 부칙 2조 1항, 3항).

(2) 공익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가) 공익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개정법이 검토되었던 시기에 공익법인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검토되고 있었던 점, 또한 공익법인에는 각각의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2005년 개정법에서는 동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특정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으로 하되, 당분간 특정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동법부칙 5조 1항). 이 경우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특정보험업이란, 보험모집에 관련하는 행위규제만을 적용하고, 해당규제의 준수상황은 주무관청이 다른 사업과 병행하여 민법의 관련규정에 입각하여 감독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공익법인에 관한 특별조치

종래에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을 인허가 하던 것을, 2006년 공익법인에 관한 개혁조치에 따라 등기만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의 공익법인은 5년 이내(2008년 12월 1일~2013년 11월 30일)에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서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으로 이행하던지, 통상의 일

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으로 이행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경과조치가 끝난 후에는 주무관청에 의한 민법의 관련규정에 입각한 감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관점에서 공익법인과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 혹은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으로 이행한 법인이 특정보험업을 하는 경우, 이행등기 이후부터는 보험업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개정법 부칙 5조 1항).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개정보험업법상의 특정보험업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므로 2013년 11월 30일까지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상공회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상기 외에도 2005년 개정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현재 특정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상공회, 또는 상공회연합회에 대하여 당분간 계속하여 특정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 인정되어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보험모집에 관련된 행위규제만 적용된다(법 부칙 5조 2항, 3항).

라) 검토규정

2005년 개정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재보험을 보험회사에 부보하는 업무, 그 외 소액단기보험자의 업무의 상황,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의 다양화 상황, 경제사회 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보험에 관한 제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에 입각하여 소정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검토규정이 설치되었다(법 부칙 38조 2항).

IV. 2010년 일부 개정법의 주요 내용

1. 개정경위

2005년 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임의단체 및 공익법인도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으로 하면서 준비기간을 두었는데, 이후 대응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2는 2006년 4월 개정법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특정보험업자로 신고한 431개의 공제단체가 경과조치 기간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표이다.

계약자에게 보장을 계속 제공하는 형태로 이행한 단체가 385개로 약 90%에 이르고, 그 가운데 8개 단체는 불가피한 사유(특수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인수자가 없었음)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그 이행을 연장하였다. 그리고 전체 약 10%에 해당하는 46개 단체가 폐업 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보험업법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존계약의 유지관리만을 하는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²⁵⁾

<표2> 특정보험업자의 이행현황

이행형태	2009년 6월말		
		이행완료	연장승인
a. 보험회사로 이행	4	4	0
b. 소액단기보험업자로 이행	52	52	0
c. 보험업법 적용제외 공제사업	198	190	8
d. 보험회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자에게 보장을 계속 제공	105	105	0
e. 보험회사 등에 공제계약을 이전	26	26	0
사업계속 합 = a+b+c+d+e	385	377	8
f. 폐업	46	45	1
합계	431	422	9

<자료> 年度別少額短期保險協會資料

25) 폐업단체의 수치는 2005년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에 특정 보험업자로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동법의 공포(2005년 5월 2일) 이후 시행일까지 폐업한 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2005년 개정법의 시행일 이전에 인수한 보험계약과 관련한 업무 및 재산관리만을 하는 단체는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조사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관련부처의 연차보고서²⁶⁾에 의하면 전국의 공익법인 약 24,000개 가운데 공제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법인 991개,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공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단, 재단법인으로 각각 이행한 후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2009년 11월말 까지 신설법인으로 이행을 신청한 건수는 약 400건으로 1.7%에 불과하였다.

이에 2009년 12월 금융청은 2005년 개정법에 대한 공제단체의 대응에 관한 실태조사²⁷⁾를 하였고, 2010년 11월 국회에서 공제사업의 규제에 관한 “보험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2010년 개정법이라 함)이 통과되었다.

2. 2010년 개정법의 주요내용

(1) 인가특정보험업자

2005년 개정법에 따라서 특정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2010년 개정법에 의거 인가를 받은 일반사단·일반재단을 인가특정보험업자라 한다. 인가특정보험업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진입규제

허가제이고, 인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2013년 11월 30일까지 인가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0년 신개정법 부칙 2조 1항, 2항).

26) 内閣府 (2009) 、2009年度特例民法法人に關する年次報告の概要

27) 金融廳 (2009) 의 “共濟事業の規制の在り方に係る検討について”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 개정법에서는 특정의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으로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개정 전부터 공제사업을 하고 있었던 단체 중에는 개정 후의 보험업법의 규제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단체가 적지 않았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제도개혁에 따라 2013년 11월말까지 신설법인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후 원래의 형태로는 공제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상을 감안하여 2005년 개정법 이전부터 공제사업을 해온 단체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에 관하여 보험업법의 규제에 특례를 두고 당분간 행정청에 의한 감독 아래, 공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도공제의 예를 참고하여 계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a) 인가요건

첫째, 신청지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가 현재 영위하는 특정보험업은 2010년 신개정법의 공포시점에서 해당 신청자 또는 해당신청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영위하였던 특정보험업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셋째, 일정한 자본과 인적구성을 가져야 한다.

넷째, 특정보험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업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섯째,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이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이 보험수리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한다.

(b) 인가신청서류

정관,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산출방법서 및 상기 인가요건 두 번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2010년 신개정법 부칙 2조3항, 인가특정보험업자 등에 관한 명령(이하 “공동명령”이라고 함)4조 1항 12호, 13호).²⁸⁾

(c) 법인격

인가특정보험업자의 법인격은 일반사단법인이나 재단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바, 임의단체가 특정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일반사단법인·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인가특정보험업자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법인설립 이전 임의단체가 보유했던 보험계약은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포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2010년 신개정법부칙 3조).

(d) 인가특정보험업의 범위

인가특정보험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특정보험업의 범위는 2010년 신개정법의

28) 인가특정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특정보험사업은 보험업법을 적용받으므로 사업방법서나 보통보험약관은 2010년 신개정법부칙 2조7항 6호가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피보험자 동의와 고지의무위반에 의한 해제, 중대사유에 의한 해제 등 부문에서 수정이 있었다. 또한 책임준비금과 관련하여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이 보험수리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험계리인의 확인이 필요하다(공동명령 4조 1항 8호).

공포 당시에 영위하고 있었던 특정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2010년 신개정법부칙 2조7항 2호).²⁹⁾ 동일성은 보험의 종류, 보험계약자의 범위, 피보험자 또는 보험의 목적, 보험금의 지급사유 등을 근거로 인가 당시 서류심사에 의거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동명령 5조).³⁰⁾

또한 소액단기보험업자가 그 자체를 가지고 인가특정보험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소액단기보험업자의 모체가 되는 단체가 별도의 일반사단법인·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인가특정보험업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e) 특정성

원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보험업을 행하는 자는 인가특정보험업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것인지에 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인가특정보험업자는 사업방법서에 피보험자의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공동명령 7조 2호 및 3호),

(f) 기초자산(자본 혹은 기금)

기초자산(자본금)은 1,000만 엔 이상이어야 하며, 가능한 조기에 순자산이 1,000만 엔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³¹⁾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공동명령 11조).

나) 업무

(a) 업무범위

인가특정보험업자는 특정보험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³²⁾³³⁾ 및 보험대리업³⁴⁾

29) 이는 2010년 신개정법의 공포 당시 영위하고 있었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가특정보험업자는 2010년 신개정법의 공포 후 신규로 인수한 보험이나 공포 전에 취급을 정지한 보험을 취급할 수 없다.

30) 인가특정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특정보험업은 사업방법서나 보통보험약관을 판단할 수 있는데, 2010년 신개정법의 공포 당시에 영위하는 특정보험의 범위는 인가시의 서류를 통해서 판단하게 된다. 이 때 2010년 신개정법 공포 당시 특정보험업자 중에는 “보험업법 적용제의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나, 보험회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자에게 보장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이들 단체 중에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0년 당시 판매하고 있던 상품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인가심사시에 실질적인 동일성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1) 계획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이어야 한다.

을 영위할 수 있고, 이것 외의 업무를 새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정보험업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2010년 신개정법부칙 4조2항가 준용하는 법 272조의 11).

또한 인가특정보험업자는 특정보험업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용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서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다(2010년 신개정법부칙 4조 4항, 5항).

(b) 자산운용

자산운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중시하면서도, 안정성을 위하여 자산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용이익을 확보지 못하여 오히려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점과,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다양하여 운용자산이 다양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채, 지방채의 취득, 예금, 일정한 금전신탁 외에 상장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및 주식의 취득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방법이 허용된다(2010년 신개정법부칙 4조 1항이 준용하는 법97조 2항, 공동명령 22조).

또한 회원의 복리후생사업의 일환으로써 대출사업을 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자에 한해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c) 업무운영

인가특정보험업자는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 고객정보의 적절한 취급 등,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2010년 신개정법 부칙4조1항, 2항이 준용하는 법 100조의 2, 공동명령 23조-32조).³⁵⁾

32) 보험모집인의 교육과 연수, 보험사고발생방지에 관련된 업무 등.

33) 보험업무외의 업무에 관하여 소액단기보험업자는 보험회사에 금지되어 있는 업무는 모두 금지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가특정보험업자에게는 공익사업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특정보험업과 타업종을 병행하여 온 실태를 감안하여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4) 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 소액단기보험업자 및 인가특정보험업자의 위탁을 받아서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대리업의 범위는 보험계약의 종류 및 보험계약자 등에 관하여 2010년 신개정법의 공포 당시에 행해진 특정보험업 또는 보험대리업의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동명령 62조).

35)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관점에서 보험회사나 제도공제의 사례를 감안하여 규정되어 있고, 보험모집에 있어서 중요사항을 기재한 서면교부에 의한 설명을 비롯하여, 외화표시보험, 소멸성보

(d) 모집규제

인가특정보험업자의 보험모집에 대한 배상책임(법283조), 고객에 대한 설명(법 294조),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금지행위(법 300조), 보험계약의 청약철회(법 309조) 및 이와 관련되는 벌칙이 적용된다(2010년 신개정법부칙 4조의 2). 또한 인가특정보험자를 위해서 보험모집을 하는 자는 해당인가특정보험자의 사원 또는 임원, 사용인, 보험대리점 및 그 임원 혹은 사용인이어야 한다.

다) 회계

(a) 구분회계

인가특정보험업자는 특정보험업 등에 관련하는 회계와 타업무와 관련하는 회계와 구분해야 하며,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보험업 등에 관련하는 계정을 가지고 다른 업무에 연계(자금운영 등)해서는 아니 된다(2010년 신개정법부칙 4조6항, 7항).

(b) 정보공시

인가특정보험업자는 사업 연도별로 업무현황과 재산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10년 신개정법부칙 4조1항, 2항에 준용하는 법 111조). 단, 인가특정보험업자가 행하는 특정보험업은 특정의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열람대상은 일반 공중일 필요는 없고, 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실시하면 된다.

(c) 책임준비금 등

인가특정보험업자는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장래채무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결산기에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 및 가격변동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은 인가특정보험업의 실태를 감안하여, 제도공제의 사례를 참고

험 등 보험계약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적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자가 서명 등에 의한 서면수령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가특정보험업자가 보험계약자보호기구(예금보험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선도 소액단기 보험자와 마찬가지로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하여 공동명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공동명령 38조~46조).³⁶⁾

(d) 보험계리인

인가특정보험업자가 보험기간이 장기이면서 보험료적립금이나 계약자배당준비금의 계상을 필요로 하는 보험 등을 인수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의 적절한 산출 등을 위해서 고도의 보험수리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보험계리인³⁷⁾의 선임 및 보험계리인에 의한 확인³⁸⁾이 필요하다(2005년 신개정법부칙 4조1항, 2항이 준용하는 법120조~122조, 공동명령 49조~56조).

라) 감독

(a) 상품심사

인가특정보험자가 영위할 수 있는 특정보험업의 범위는 보험의 종류, 보험계약자의 범위,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 및 보험금의 지급사유 등이, 2010년 신개정법의 공포 당시에 영위하고 있었던 특정보험업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2010년 신개정법부칙 2조7항2호, 공동명령 5조).³⁹⁾

(b) 감독내용

검사, 업무개선명령, 업무정지명령, 인가취소 등을 취할 수 있다(2010년 신개정법부칙 4조 1항 및 2항이 준용하는 법 131조~133조, 272조의 22, 23, 27). 단, 건전성기준에 관해서는 2010년 신개정법부칙 4조 1항 및 2항이 준용하는 법 132조 및 개정법부칙 4조 10항에서 지급여력비율을 사용한 조기시정조치 기준이 규정

36) 책임준비금 가운데, 보험료적립금은 평준보험료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인가특정보험업자의 업무 또는 재상상황, 보험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이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에 관해서도 공동명령 43조 5항에 정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7) 보험계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일본 계리인회의 정회원으로 보험수리 또는 연금수리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자 또는 준회원으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자이어야 한다.

38) 보험회사, 소액단기보험업자, 제도공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책임준비금이 적정하게 적립되었는지, 계약자배당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9) 따라서 인가특정보험업자가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신상품이 2010년 신개정법의 공포 당시에 하고 있었던 특정보험업의 범위내로 한정할 필요에 의해 사업방법서 및 보통보험약관의 변경은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함. 변경 전에 실시되었던 특정보험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인가를 하지 않는다(2010년 신개정법부칙 4조 1항, 2항에서 준용하는 법123조 124조).

되어 있지만, 인가특정보험업자의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청이 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인가특정보험업자에 대한 감독지침Ⅱ-2-2).

<표 3> 인가특정보험업자와 소액단기보험업자의 규제비교

항목		인가특정보험업자	소액단기보험업자
진입	규제	인가제	등록제
	법인격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주식회사, 상호회사
	최저자본금	300만엔	1,000만엔
	순자산	1,000만엔. 1,000만엔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선계획의 이행으로 계획달성이 예상되어 함.	1,000만엔
	공탁금	없음	1,000만엔+연간수입보험료의 5%
사업규모		제한 없음	연간수입보험료 50억엔 이하
손·생보겸업		겸업 가능	좌동
취급상품		2010년 신개정법 당시의 특정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해야 함	소액/단기/소멸형으로 제한
자산운용		현·예금, 국채, 지방채, 금전신탁, 상장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와 주식, 행정청이 승인하는 방법 등	현·예금, 국채, 지방채, 원금보장형 금전신탁 (외화표시 자산, 주식보유 금지)
업무범위		본업+다른 소액단기보험업자/보험회사 등을 위한 대행업무+행정청이 승인한 타업종 및 자회사.	본업+ 다른 소액단기보험업자/보험회사의 대행업무
책임준비금 등		책임준비금, 가격변동준비금, 지급준비금	좌동
보험계리인		선입필요. 단 보험기간 1년 이상의 보험료적립금 등의 계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선입필요
안전망		가입대상이 아님	좌동
기타		모집규제, 검사/감독은 기본적으로 동일	

V. 요약과 약간의 시사점

2003년 무면허공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2005년 일본 국회는 소액단기보험업자의 신설과 공제사업의 보험업법 편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개정법안 적용에 적합하지 않는 공제단체 문제가 부각되면서, 2010년 일정한 규제와 감독의 틀을 갖춘 인가특정보험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개정하였다. 재개정법은 공제사업의 성격에 관하여 앞으로 운영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새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완전한 감독일원화는 보류되었고, 인가특정보험업자에 대한 규제는 소액단기보험업자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완화된 내용이었다.

공제와 관련된 일본의 보험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공제와 보험에 대한 감독일원화 및 소액단기보험업에 관한 국내의 논의에 약간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공제의 보험업법 적용에 관하여 일본모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제를 보험업법 체제에 편입하기 위하여 소액단기보험업을 신설했지만 제도적 결함이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가특정보험업을 신설하였지만 이 또한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이는 공제의 보험업법 적용과 감독일원화 논의가 공제의 다양성과 기능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공제사업의 보험업법 편입에 대한 일관된 관점이 “계약자 보호”였다는 점이다. 그간의 국내에서의 논의가 주로 효율성이나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감독일원화를 강조해 왔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자나 감독자의 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공제제도 고유의 이념이나 기능의 손상, 나아가 공제제도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법 개정이 무산되거나 개정이 되더라도 형식화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이기형,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KIRI Weekly, 178. 2012.4.
- 川村基壽, “共濟事業に關する係わる保險業法について”, 生命保險論集, No.178, 2012.
- 田村祐一郎, “共濟問題と保險政策”, 田村祐一郎他編著『保險制度の新潮流』, 千倉書房, 2008
- 押尾直志, “協同組合保險としての共濟と無認可共濟に關する考察-保險經濟論からみた本質的相違を中心に-”, 2006일본보험학회학술대회논문집, 2006.
- 保井俊之・豊田眞由子・白藤文祐, 保險業法Q&A:少額短期保險業のポイント、保險毎日新聞社, 2006.
- 總務省行政評價局, 根據法のない共濟に關する調査結果報告書, 2004.
- 國民生活センター, 根據法のない共濟をめぐる現狀等について, 2004.
- 金融審議會金融分科會第二部會, 金融審議會金融分科會第二部會報告書-根據法のない共濟への對應について-, 2004.
- 內閣府, 2009年度特例民法法人に關する年次報告の概要, 2009.
- 金融廳, 共濟事業の規制の在り方に係る檢討について, 2009.
- 日本少額短期保險協會, 2011年少額短期保險ガイドブック, 2011.